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반 법령에 따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을 "병원"이라 칭하고, 수집·운반업체·처리 업체를 "처리업체"라 칭한다.

1. 목적

본 지시서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 용역 업무 위탁처리에 따른 세부사항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

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중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단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섬유류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소각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이 가능함)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환경부장관 고시), 골판지용기, 개별포장용 비닐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3. 수집 및 운반, 처리

가. 일회용기저귀는 전용봉투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사업장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은 반드시 허가받은 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토록하며, 운반차량은 섭씨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일회용기저귀를 주3회 이상 수집·운반하여 법정보관기간 경과 이전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단, 병원 요청 시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사업장폐기물 상차, 운반시 병원의 사업장폐기물담당자의 입회하에 상차를 하고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마. 일회용기저귀 처리시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소각업체에 한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병원의 일회용기저귀 보관 장소를 주1회 이상 약물소독 실시해야한다.

4, 처리능력

계약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불법처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 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의 모든 피해는 계약대상자가 책임 보상한다

6. 관련법변경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액의 변경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이행 사항

가.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제32조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처리업체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병원에게 제출한 다음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거 계획서

(2) 관할기관 신고서

(3) 운반차량 및 비상연락망 등

다. “처리업체”는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처리업체”는 운반 시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사업장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마. 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 수집, 운반은 주 3회 이상이어야 하며(협의 가능) 수집, 운반 시 전량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및 병원의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정해진 수거횟수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병원의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위생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이 입력하여야 한다.

사.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아. 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 처리(수집,운반,중간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처리업체”가 민, 형사상 모든책임을 진다.

자.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일회용기저귀)의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 위생상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처리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병원”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재 위탁할수 없다.
다만,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병원의 승인하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카. “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 및 계약조건(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 “처리업체”는 “병원”의 요청 시 의료폐기물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원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 관련법규의 변경이나 추가, 삭제 시 “병원”의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의한 모든 제반 책임은 “처리업체”에 있다.

하.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치리업체 변경증명을 신속하게 받아서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 처리 사항이 발생 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거.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병원”과 “처리업체” 간에 상호협의하에 결정키로 한다.